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 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내용

-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 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사항

-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